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9차보건복지위원회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본인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전송〉

■ 이수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3836호)

2024. 11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이지민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3
1. 개정안의 내용	3
2. 검토의견	7
3.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	11

I. 개요

1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이수진의원 등 13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9. 10.
- (3) 회 부 일 : 2024. 9. 1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(轉院)하는 경우 환자가 기존에 진료받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료기록이 전달되고 있음.

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의 소모, 진료기록 사본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있고, 이미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사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동 시스템을 통하여 진료기록이 전송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따라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
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
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
응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3 신설).

3. ~ 19. (생 략)

④ · ⑤ (생 략)

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 ① ·

② (생 략)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~ ⑨ (생 략)

<신 설>

3. ~ 19. (현행과 같음)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이하-----

-----.

④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21조의3(진료기록의 전송 요청)

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환자는 제1항에 따른 전송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전송 요청의 방법 ·

제47조의2(입원환자의 전원) 의료기관
 관의 장은 천재지변, 감염병 의심
 상황,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
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(轉院)시
 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·
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
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
 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
 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
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
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
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
 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
 수 있다.

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 보건복지
 부장관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 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, 제16
 조제2항,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
 은 조 제2항·제3항, 제23조제2
항, 제34조제2항, 제35조제2항, 제
 36조, 제36조의2, 제37조제1항·
 제2항, 제38조제1항·제2항, 제38
 조의2, 제41조, 제41조의2제1항·
 제4항, 제42조, 제43조, 제45조,
 제46조, 제47조제1항, 제58조의4

절차, 전송의 절차 및 기한, 대리
 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에
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 정한다.

제47조의2(입원환자의 전원) -----

 -----전원-----

 -----.

제63조(시정 명령 등) ① -----

 -----제21조의3제1항
후단, 제23조제2항-----

제2항 및 제3항,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,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·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·제3조의4제1항·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,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·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제90조(벌칙) 제16조제1항·제2항, 제17조제3항·제4항, 제17조의2제1항·제2항(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), 제18조제4항, 제21조제1항 후단(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1조의2제1항·제2항, 제22조제1항·제2항(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23조제4항, 제26조, 제27조제2항, 제33조제1항·제3항(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5항(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), 제35조제1항 본문,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·제9항, 제41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0조(벌칙) -----

-----제
21조의2제1항·제2항, 제21조의3
제1항 후단-----

조, 제42조제1항, 제48조제3항 · 제4항,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시행일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	

2. 검토의견

□ 진료기록 관련 현행법 체계는 다음과 같음.

-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보다 「의료법」이 우선 적용되고, 「의료법」 제21조제2항1)에 따르면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으나,
- 「의료법」 제21조의2제1항2)에 따르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 등을 전송

- 1) 「의료법」 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 환자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(추가기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2) 「의료법」 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.

하도록 하고 있음.

- 또한 「의료법」 제21조의2제2항³⁾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러한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른 진료기록의 전송과 응급환자의 이송에 따른 진료기록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”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음.⁴⁾
- 다만, 현재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의료기관간에 진료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도록 하는 전송요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.

□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

3) 「의료법」 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.

4) 「의료법」 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, 변조,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, 방화벽의 설치,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할 것

2.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

3.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

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·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·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다.

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,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□ 다만, 현행 진료기록전송시스템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전체 39,708 개소 중 8,961개소로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참여율이 22.6%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- 개정안은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전송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위법령 규정시 팩스,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송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⁵⁾ 그 밖에 우편 등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송부도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⁶⁾

< 의료기관 종류별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참여 현황 >

(단위 : 개소, '24.8월 기준)

구 분	합계	상급 종합병원	종합병원	병원	의원	기타**
참여 의료기관(A)	8,961	47	222	1,234	7,179	279
전체 의료기관(B)*	39,708	47	331	2,784	36,267	279
참여비율(A/B×100)	22.6	100.0	67.1	44.3	19.8	100

* 건강보험통계연보 등 요양기관 현황 자료(건강보험심사평가원, '24.6월 기준) ※ 분기별 통계

** 치과, 한방, 정신병원, 기타기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시스템 연계기관(근로복지공단 등))

자료: 보건복지부

5) 보건복지부는 「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·운영편람」에서 의료기관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(「의료법」 제21조의2)을 할 때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도 가능하며,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.

6) 「의료법」 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 제1항에서는 “송부 또는 전송”이라고 하여 송부와 전송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.

□ 그 밖에 체계·자구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21조제3항에서 “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할 것을 요청한 경우”(제2의2호)를 신설한 것은, 동 조항이 진료기록의 타인 열람 금지 원칙의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⁷⁾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를 이와 유사한 예외사유로 열거하는 것은 법 체계상 조화롭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또한, 안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“환자는…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…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”고 하여 전송 방법과 전송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,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 환자가 요청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, 진료기록 전송(또는 송부) 의무와 그 방식에 대한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⁸⁾

7) 제21조(기록 열람 등) ① 환자는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(추가 기재·수정된 경우 추가기재·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·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 ②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사·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1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형제·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 2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 3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형제·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 4.~19. (생략)

8) 참고로, 제21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인 진료기록 전송 요청 근거를 담은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정애의원 대표발의, 제2122311호)를 심사한 결과, 진료기록 전송 방법은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고 안 제21

3.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

1) 보건복지부(수정 수용)

□ 환자가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적 진료 정보교류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.

- 다만, 환자가 전송 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「의료법」 제21조의2처럼 진료기록 전송 의무와 전송 방식을 분리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- 제21조는 본인 진료기록 열람에 관한 조항으로 제21조에서 제21조의3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(제2의2호 신설)은 법 체계상 조화롭지 못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2)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수용 및 참고의견)

□ 개정안 취지에 공감함. 다만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, 전송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과 일관성, 정합성을 고려하여 「의료법」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기를 바람.

조제3항에 환자·대리인이 진료정보 전송을 요청할 경우를 신설하는 부분(제2의2호)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「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」을 의결(2023.9.21.)하였으나,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계 반대 의견 등을 이유로 계류되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.

-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의료기관 등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는 이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('23.3월)으로 기도입되었으며,⁹⁾ 전송요구 및 전송, 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동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.¹⁰⁾

9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의2(개인정보의 전송 요구)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
 - 가. 제15조제1항제1호,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
 - 나.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
 - 다. 제15조제1항제2호·제3호,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·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
 2.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·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
 3.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
-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,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, 개인정보 처리 능력,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1.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
 2.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, 비용,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.
1. 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
 2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6조
 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
-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.
-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, 전송 요구의 방법, 전송의 기한 및 방법,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,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칙 <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제11조의2, 제31조, 제35조의3, 제37조의2, 제39조의7, 제60조제5호, 제75조제2항제16호·제20호·제21호·제24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·제9호의 개정규정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
2. 제35조의2의 개정규정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

10)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근거 조항(제35조의2) 관련, 시행일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미개정(법제처 심사 중, "24.8.29")되어 시행일도 미정인 상황임.

3) 대한치과의사협회(반대)

□ 의료기관의 행정적·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개원가 수용 어려움.

- 보건의료데이터 유통 및 전송을 위해서는 병·의원에서 생성, 수집, 관리 되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병·의원의 명확한 권리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4) 대한간호조무사협회(신중검토)

□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나,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율 제고가 선행되거나,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부터 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.

-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참여율은 약 50%,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은 약 20%임.

문 의 처
02)6788-5494